



서울시 CNG버스 도입 추진방향

이 자료는 최근 한국천연가스차량협회가 주최한 학술발표회 및 강연회 내용이다.

1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 개요

■ 추진목표

- 1단계(1999~2002년)

(단위 :대)

구분	합계	1999년	2000년	2001년	2002년
CNG버스(대)	2,000대	15	480	700	805

- 2단계(2003~2007년) : 기존 버스 전량 대체 보급

※서울시 시내버스 현황(79개 업체)

- 시내버스 : 8,391대(차령 8년, 연간 약 12%씩 대·폐차)
- 차 고 지 : 135개소(시내 104개소, 시외 31개소)

■ 추진방향

- 천연가스버스 보급기반 구축을 위한 충전소 등 적극 확충
 - 기존차고지 이외에 활용 가능한 사유지 등의 여유공지 최대한 활용

- 차고지 이외의 입지확보를 위한 제반절차 조기 해결
- 천연가스버스 구입 및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
 - 천연가스버스 : 경유버스 대비 가격 상승금액 지원(보조 및 융자)
 - 충전시설 : 설치비용 융자지원
- 천연가스 충전여건이 되는 운수업체의 대 폐차 대상은 가능한 천연가스버스로 전환
 - 시내버스 고급화사업과 연계추진(천연가스버스로 전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)
 - 충전시설 설치시기와 대·폐차 시한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대·폐차 시한을 연장

2. '99시범은행 사업

- 은평공영차고지 충전시설 설치
 - 충전시설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2000년 6

월29일 본격 운행

- 천연가스버스(15대)는 2000.5.25 제작 완료

■ 버스차고지(대진운수, 상신교통)충전시설 설치

- 충전시설 설치공사가 완료되는 2000년 9~10월경 천연가스버스 본격 운행예정

3. 2000년도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 추진계획

■ 개요

-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: 480대
- 천연가스 충전시설 설치 : 13개소

■ 소요예산

- 천연가스버스 : 148억8천만원
 - 보조 : 79억2천만원(국비-3,960, 시비-3,960)

-용자 : 69억6천만원(전액 시비)

※버스 1대당 : 3,100만원(보조-1,650, 용자-1,450만원)

○ 충전시설

-용자 : 49억원(국비 배정액)

-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만의 제한된 수요로 인해 투자회수 기간이 장기간(15년 이상) 소요되며 국고지원(용자)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(7억원/개소)

- 미 배정된 충전시설(6개소)의 용자금(36억원)은 환경부에 추가 배정 요청 중

■ 천연가스보급 및 충전시설 설치 세부계획

- 시유지 등에 충전소를 설치하여 보급 : 2개소
- 운수업체 차고지에 충전시설 설치 보급 :

〈시유지 등 충전소 설치 보급 현황〉

구 분	대표지번	소유구분	사용면적(평)	도시계획시설(용도)
기양하수 처리장부지	강서구 마곡동 91번지	시유지	395	하수도, 도로접합 (자연녹지지역)
우이동 주차장 부지	강북구 우이동 4-9번지	시유지	475	도로 및 도로저촉 (일반주거지역)

11개소

- 여건적합 차고지 : 9개소
- 퇴출업체 매입차고지 : 1개소
- 공영차고지 : 1개소(강동권역)

○ 충전시설 설치 방안

-시유지 및 공영차고지

- 버스업계의 열악한 경영여건 등을 감안하여 도시가스회사에서 우리시에 기부체납 조건으로 설치

- 서울시에서는 기부체납한 충전설비를 일정기간 동안 무상 사용토록(공공용 적용)조치

- 충전시설 부지 사용료도 시내버스 운송사업이 여객의 원활한 운송 등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사업임으로 공공용(25/1000)으로 적용할 예정임

- 토지사용료 징수에 따른 가스업계의 추가부담을 수송용 도시가스 요금(소매)의 공급비용에 반영 조치

-운수업체 차고지

- 운수업체에서 제공한 부지에 도시가스회사에서 충전시설 설치

- 도시가스회사가 충전시설을 안정적으로 관리·운영할 수 있도록 지상권 설정계약 유도

■ 입지선정 등 추진상 애로사항 및 대책

- 개발제한구역내 입지제한으로 설치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



-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 필요

◦ 특별법 제정 필요

- 운수업체 차고지나 시유지에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개별법의 각종 규제사항을 해결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충전시설 설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게 되면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임

<예 시>

- 개발제한구역에 회차지만 있는 경우
 - 범일운수(광명시 소하동 1055-6)
 - 1981년부터 회차지로 명령을 받고 현재까지 미인가 차고지로 활용하고 있음
 - 제일여객(은평구 진관외동 269)
 - 1983년부터 미인가 상태에서 차고지로

사용하고 있음

◦ 차고지가 협소하여 충전시설 설치가 어려운 경우

- 선진운수(은평구 구산동 202-12)
 - 동 차고지가 2개소로 분할되어 있고 면적이 협소하여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622-7외 10필지의 소유부지를 미인가 상태에서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음
- 대원교통(남양주시 금곡동 153-1)
 - 동 소재지의 차고지(1,320㎡)가 협소하여 현재 미활용하고 있는 금곡동 183-19외 6필지의 소유부지에 충전시설 설치를 제시하고 있음
- 개발제한구역내 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
 - 아진교통(도봉구 도봉동 282-212)
 - 주차장을 미인가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음